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09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 민형배・이용빈・김홍걸

변재일 • 이정문 • 양정숙

김철민 · 송영길 · 신영대

송갑석·윤영덕 의원

(11일)

제안이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확충이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의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지방세법」은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산출을 위해 부동산 현황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산출된 세금이 타 지역으로 귀속됩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지역으로 귀속되어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의 세수를 확보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세원 배분의 왜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안제89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납세지"를 "납세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	제89조(납세지 등) ①
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	1
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	
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u>납세</u>	납세
<u>지</u> <단서 신설>	<u>지.</u> <u>다만, 「소득세법」 제94</u>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
	도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
	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